3.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등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①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②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③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④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⑤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⑥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⑦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⑧	
구조 및 용도	⑨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⑩ 착공일	. . .	⑪ 완공일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⑫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⑬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⑭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연면적은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기계설비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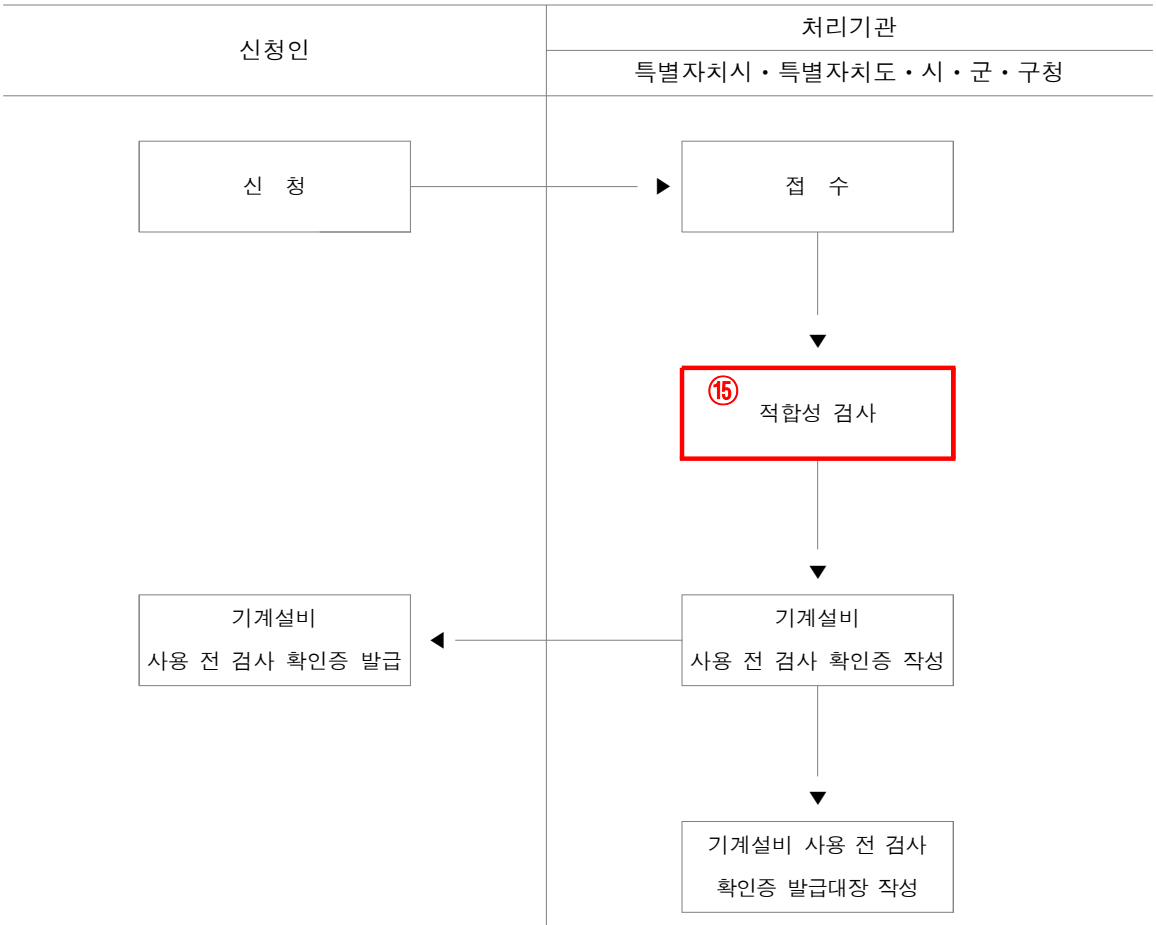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의 건축물 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② "공사업 등록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한다.

③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④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감리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⑤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건축법」 제2조제15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⑥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7호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

⑦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⑧ "공사의 종류"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기계설비의 범위를 말한다.

⑨ "구조 및 용도"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를 말한다.

⑩ "착공일"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⑪ "완공일"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완공일을 말한다.

⑫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란 준공된 건물의 최종설계도서로 기계설비 설계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를 말한다.

⑬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첨부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도 작성하여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⑭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란 제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와 제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⑮ "적합성 검사"란 기계설비 사용 적합여부를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검사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6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①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 호		②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공사명				
건축허가번호				
③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일	. . .

검 사 항 목 및 내 용 (해당항목만 √ 기재) ④	해당여부	⑤검사결과	비 고
1. 기계설비 유지관리 공간 계획			
1) 기계실	[ ]	[ ] 적합 [ ] 부적합	
2) 피트	[ ]	[ ] 적합 [ ] 부적합	
3) 샤프트	[ ]	[ ] 적합 [ ] 부적합	
4) 점검구	[ ]	[ ] 적합 [ ] 부적합	
2. 기계설비 기술기준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2) 공기조화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3) 환기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4) 위생기구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5) 급수·급탕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6)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8) 배관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9) 덕트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10) 보온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11) 자동제어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12) 방음·방진·내진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3.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 확인			
1) 기계설비 성능 확인	[ ]	[ ] 적합 [ ] 부적합	
2) 기계설비 안전 확인	[ ]	[ ] 적합 [ ] 부적합	

첨부사항 ⑥
1.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2.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3.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종합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 80g/㎡]

①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 「건축법」 제2조제15호,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여 부여받은 등록(신고)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7호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법」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주택법」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

④⑤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한다.

⑥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세부공종	[별표 2] 공기조화설비
공 종	공기조화설비	위치	

구 분	검 사 항 목 (해당항목만 √ 기재) ①	해당여부	② 검사결과
도 서	준공도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준공도면, 시방서)	[ ]	[ ] 적합 [ ] 부적합
자 재	주요기자재 선정 및 사용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시 공	공기조화기의 설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팬코일유닛의 설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방열기의 설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온수온돌난방의 설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배관 및 덕트 등의 연결상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밸브 및 계측기기류 설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보온 및 마감상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성 능	공기조화기의 작동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온수온돌난방설비의 공기빼기작동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제작사의 성능시험 성적서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유지관리	유지관리(운전관리 등) 지침서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유지관리공간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구 분	기계설비시공자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확인일
회사명(상호)	③	(인) ④	. . .
회사명(상호)		(인)	. . .

주)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원도급자, 하도급자)이 다수인 경우에는 모두가 확인해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①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공기조화설비)가 각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한다.

② 검사항목별로 이 매뉴얼의 '2. 기계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적합/부적합을 판단한다.

③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과 대표자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④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 시 현장에 배치되는 기계설비 기술인을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각 회사의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성명을 기입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4호 서식]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기계설비 시공자 ①	상 호		시공면허등록번호 ②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공 사 명				
건축허가번호 ③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④		(서명 또는 인)	작 성 일	. . .

검 사 항 목 및 내 용 (해당항목만 √ 기재) ⑤	해당여부	⑥ 검사결과	비 고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계통			
1) 열원 장비	[ ]	[ ] 적합 [ ] 부적합	
2) 냉난방 펌프	[ ]	[ ] 적합 [ ] 부적합	
2. 공기조화/환기 계통			
1) 공기조화기	[ ]	[ ] 적합 [ ] 부적합	
2) 송풍기	[ ]	[ ] 적합 [ ] 부적합	
3) 단말기기(팬코일, 방열기 등)	[ ]	[ ] 적합 [ ] 부적합	
4) 환기장치(환기유니트 등)	[ ]	[ ] 적합 [ ] 부적합	
5) 덕트 계통	[ ]	[ ] 적합 [ ] 부적합	
6) 배관 계통	[ ]	[ ] 적합 [ ] 부적합	
3.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 계통			
1) 위생 펌프	[ ]	[ ] 적합 [ ] 부적합	
2) 배관 계통	[ ]	[ ] 적합 [ ] 부적합	
4. 오수정화, 중수도, 빗물처리 계통			
1) 오수정화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2) 중수도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3) 빗물처리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5. 자동제어 계통			
1) 중앙제어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2) 현장제어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	[ ] 적합 [ ] 부적합	
4) 원격검침설비	[ ]	[ ] 적합 [ ] 부적합	
6. 방음방진내진 계통			
1) 장비	[ ]	[ ] 적합 [ ] 부적합	
2) 덕트계통	[ ]	[ ] 적합 [ ] 부적합	
3) 배관계통	[ ]	[ ] 적합 [ ] 부적합	

210mm×297mm[백상지 80g/㎡]

①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과 대표자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공면허등록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한다.

③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④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6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

시 현장에 배치되는 기계설비 기술인을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술인의 성명을 기입한다.

⑤ 사용 전 확인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각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한다. 검사항목은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3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의 성능부분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⑥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의 성능 부분과 이 매뉴얼의 성능 확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합/부적합을 판단한다.

「기계설비 기술기준」[별지 제5호 서식]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 ①시공자	상 호		② 시공면허등록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공 사 명			
건축허가번호 ③			
현장배치 기계설비기술인 ④	(서명 또는 인)	작 성 일	. . .

검 사 항 목 및 내 용 (해당항목만 √ 기재) ⑤	해당여부	⑥ 검사결과	비 고
보일러실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경보기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보일러의 안전장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냉동기는 친환경냉매를 사용하기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냉동기의 안전장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탱크류 안전밸브 설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환기장치의 외기도입구 및 배기구는 안전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실외기는 안전에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냉각탑의 냉각수에 레지오넬라균 번식방지 조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저수탱크 청소 완료(필증)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저수탱크 물넘침에 대비하여 배수시설과 알람시설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음용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시험성적서)	[ ]	[ ] 적합 [ ] 부적합	
급수, 급탕 등의 역류방지 장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급탕가열장치의 온도 및 압력에 대한 안전장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교차배관으로 인한 오염발생 방지조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각 위생기구에 공급되는 급수압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물배관 및 계량기의 동파방지 조치는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동파방지 발열선의 과열시 전원차단 및 경보시설은 적합한가	[ ]	[ ] 적합 [ ] 부적합	

210mm×297mm[백상지 80g/㎡]

①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과 대표자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공면허등록번호"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말한다.

③ "건축허가번호"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를 말한다.

④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이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6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시 현장에 배치되는 기계설비 기술인을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술인의 성명을 기입한다.

⑤ 안전확인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각 검사항목 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한다.

⑥ 검사항목별로 이 매뉴얼의 '2. 기계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적합/부적합을 판단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①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②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③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④ 검사 결과	건축허가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검사 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판정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자치구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① "신청인(건축주)"의 신상정보(주소는 주민등록기준지를 기재)를 기재한다.

② "기계설비시공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4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과 대표자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등에 복수의 회사가 기계설비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되는 모든 회사를 기입한다. 이 경우 이 서식에 줄을 추가하거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 상호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상호명을 기재

- 공사업 등록번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
- 대표자 : 기계설비시공자 소속업체의 대표전화 번호 기재
- 전화번호 : 기계설비시공자 소속업체의 대표전화 번호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기계설비시공자의 소속 업체의 주소(소재지)를 기재

③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란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 「건축법」제2조제15호, 「주택법」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복수의 감리업체일 경우에는 대표 업체만 기입하거나 모든 업체를 기입할 수 있다.

- 상호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소속 업체의 상호명 기재
-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 기계설비감리 업무를 수행한 자의 관련 등록번호
- 대표자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소속 업체의 대표자명 기재 및 서명
- 전화번호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소속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소속 업체의 주소(소재지) 기재

④ "검사 결과"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 건축허가번호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 공사 현장 명칭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공사현장명칭
- 검사 연월일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일자 기재
- 검사자 :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담당 검사자(허가권자)의 소속과 성명 기재 및 서명
- 판정 : 적합/부적합 여부 기재 및 부적합 시 부적합 이유 기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① 일련번호	신청인(건축주)		② 건축 현장						③ 처리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현장명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규모(층수)	검사 연월일	발급 연월일	담당자

297㎜×210㎜[백상지(80g/㎡)]

① "일련번호"는 허가권자(사무분장등에 따라 분장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업무를 당당하는자 또는 위임받은자)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기록 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한다.

② "신청인(건축주)", "건축현장"은 신청인, 건축현장에 관한 내용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토대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처리"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지 8호 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참고하여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 검사 연월일 : 사용 전 검사를 위한 현장 검사일의 일자를 기재
- 발급 연월일 : 사용 전 검사 후 확인증 발급 일자를 기재
- 담당자 : 사용 전 검사 담당 허가권자의 소속 및 성명 기재

02

기계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판단기준 ·····33
2.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판단기준 ·····48
3.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검토서 작성 예시 ·84
4.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판단기준 ·····95